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-43호

보상계획 열람 공고

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-132호(2021.07.05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“하나개입구 ~ 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”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7일

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

1. 공익사업의 개요

가. 사업명칭: 하나개입구 ~ 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
나. 사업위치: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245 ~ 무의동 산189번지 일원
다. 사업시행자: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
라. 보상업무 수행기관: 한국부동산원
마. 사업규모: L=1,014m, B=10.0m(왕복 2차로)
바. 사업시행기간: 실시계획인가일 ～ 2023. 12. 31.

2. 금번 보상대상 내역 : 89필지, 23,515㎡, 소유자 50인 등

구분	소재지	편 입 지 번
토지	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	산171-52, 118-5, 118-3, 118-4, 117-1, 117-2, 산171-53, 115-1, 115-2, 산171-42, 산171-43, 산171-44, 산171-45, 산171-46, 산171-47, 112-4, 산171-48, 산171-49, 산171-50, 산171-51, 111-2, 산173-1, 112, 844, 111-1, 110-6, 110-2, 109-9, 110-4, 110-5, 109, 109-8, 108-5, 108-2, 108-3, 108-4, 109-6, 811, 107-1, 107-2, 97-8, 97-6, 97-3, 97-5, 산178-5, 산178-6, 산178-8, 산178-4, 산178-2, 산178-7, 97-7, 산178-3, 96-1, 산181-3, 92-5, 92-6, 92-7, 92-4, 94-3, 94-2, 94-4, 85-3, 산184-4, 95-9, 산191-5, 95-8, 산191-6, 산190-2, 산189-8, 106-1, 99-1, 119-18, 119-19, 119-20, 119-21, 119-22, 119-23, 119-24, 119-25, 119-26, 119-27, 119-28, 119-12, 119-13, 119-14, 119-15, 119-30, 120-5, 산195-4
물건	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관계 등 일체 (소유자 별 개별통지)	

※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입 토지 상 지장물 포함. 자세한 토지(물건)조서는 열람장소 및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. (단,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함)

※ 공익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중 미분할 필지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대체함.

3.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

가. 열람기간: 2022. 3. 7.(월) ~ 2022. 3. 21.(월)

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: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

- 주 소: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청라빌딩 405호 한국부동산원
- 연락처: 전화) 032-569-7566 / 팩스) 032-569-7569

다.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

1) 토지 또는 물건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2)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편입면적 변경, 불법점용, 과거에 보상된 내역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대상 면적·수량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4. 보상시기: 추후 우편으로 개별통지 할 예정임.

개인 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, 보상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.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액 산정 및 통지

보상액은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.

나. 보상금 지급

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.

다.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에 따라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,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

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**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**까지 **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에 요청**하여야 하며, 제출양식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▶

연번	토 지 소재지 (동 지번)	편입면적 (㎡)	토지 소유자			전화번호	서명 날인	추천 감정평가업자
		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		

※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, 반드시 **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 첨부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시한 사본)**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망자의 **상속인**께서는 **망자의 상속인**임을 **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**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.

라. 보상절차

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→ 보상액 산정 → 보상협의 요청(보상금 개별통지) → 협의(계약체결) →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→ (협의 불성립 시) 수용재결 →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→ 이의재결 또는 소송

6. 기타 사항

가.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.

나.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,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**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(☎032-569-7566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